

보건소 부분감사 결과 보고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9. 23. ~ 9. 25.(3일간)
-  감사범위 : 2012. 10. 30.이후 업무전반
-  감 사 반 : 법무감사담당 김종삼 외 3명
-  감사내용
 -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
 - 각종 업무처리 실태 적정여부 등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본 처분 7건(시정 2, 주의 5)
- 재정상 조치
 - 1건 380,000원 (회수 1건 380,000원)

지적사항

1. 청사 보안점검 소홀

-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한 기관 중 숙직을 무인화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여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고, 당직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총무과에서는 수시로 복무기강 철저히 보안점검 강화를 지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진료소에서는 2012.11월부터 2014. 6월까지 37회를 최종 퇴청 시 보안점검 소홀
▶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지도·감독 부서인 보건소장은 수시 교육 및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2. 월별의약품 수불대장 작성 부적정

- 농촌지역 보건의료의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로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주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보건진료소 등에서 월별 의약품출납대장을 기록 보관하면서 2012~2014년까지 ○○보건진료소 외 4개소에서는 월별 의약품 수불대장에 약품의 유효기간 미 작성
▶ 미 작성된 약품 유효기간을 작성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근무일지 보관 부적정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근무상황을 보건진료소 근무일지에 매일 기록하여야 하며,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 보건진료소 근무일지 및 의료장비 등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함에도 2012~2014년까지 ○○보건진료소 외 2개소에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근무일지를 매일 출력하지 않고 감사일 전에 일괄 출력 관리
▶ 매일 기록하는 근무일지는 당일 작성·출력하여 관리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4. 세외수입 수납금 지연 납부

- 「지방재정법」 제63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수납금의 납입)에 따라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보건지소 외 4개소에서는 2012~2014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체 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 급여 비용, 의사소견서 비용 101건에 대하여 다음날까지 세입처리 하지 않고 최대 7일까지 지연납입

- ▶ 세외수입 수납금은 입금일 다음날까지 세입처리를 완료하고, 철저한 업무 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5. 보조사업 정산검사 미실시

-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및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에 의거 보조사업 시행 전 보조금 신청자에게 교부결정 통지해야 하며, 보조사업의 완료 후에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의거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하나 2012~2013년까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및 취약지역 응급 의료 기관 육성사업에 대하여 정산검사 미실시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6. 물품검사조서 미징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끝내면 이를 확인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생략)를 작성하여야 함에 보건소 구급차 구입에 대하여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데도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품대금 지급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7. ○○ 보건진료소 철거공사 감독관리 소홀

-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 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하여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에도 (주)■■■■■■■■과 계약한 ○○보건진료소 철거공사의 설계서 내역 중 지붕철거(기와) 노무비가 계상되어 있으나 시공상에서는 중장비(굴삭기)로 철거하였음에도 이를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정산조치 없이 도금액기준 380,000원 과다 지급

- ▶ 과다 지급된 공사비 380,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